

## 중계유선방송사업 관련 안내사항

### □ 중계유선방송 관련 법규

- 법령 : 방송법 및 방송법시행령
- 규칙 :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
- 방송통신위원회 고시
  -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
  -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·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

 관련 규정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(<http://www.kcc.go.kr> : “정책/정보센터”→ “법령정보”)에서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.

### □ 사업운영 관련 주요 규정

-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

구 분	내 용	비 고
변경허가 (법15조)	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(법인만 해당)	
	개인사업의 법인 전환	
	개인사업의 양도	
	방송구역의 변경	○ 합병, 분할 등으로 인한 경우만 허가 방침
	방송채널의 변경(장치변경 또는 채널확대)	○ 31개 이하까지만 가능
	주전송장치 등 방송시설의 변경 또는 이전	
재허가 (법17조)	허가 유효기간(3년)이 지나서 계속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	○ 허가기간 만료 6개월까지 신청

-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
  -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 시(법인인 경우만 해당)
  - 이용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
- 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(법제15조제2항)
  - 대표자 변경시(법인의 경우만 해당)

- 법인명 또는 상호 변경
-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(\* H/E가 설치된 장소인 경우 허가 대상임)
-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시

☞ 각종 허가, 승인, 신고 등을 위한 지정된 서식이 있으며, 서식은 “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” 별지서식을 활용하면 됩니다.

## □ 관련기관

- 정부기관 : 허가, 신고 처리, 정책 등

☞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

(110-777) 서울 종로구 세종로 20 ; 전화 02)750-2458, 팩스 02)750-2469

- 산하단체 : 장소이전, 재허가 등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 검사

- 한국전파진흥원(<http://www.korpa.or.kr>)

\* 지역본부 : 서울, 부산, 강원, 경기, 경북, 충청, 강원, 전남, 전북, 제주

## □ 신청서 제출방법

- 신청서 원본을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, 신청서 자료는 전자메일로 송부 후 전화요망

- 방송통신위원회 주소 : 서울 종로구 세종로 20 방송통신위원회 뉴미디어정책과 증계유선담당

- 전자메일 주소 : [leolth@kcc.go.kr](mailto:leolth@kcc.go.kr)

- 담당자 연락처 : 02-750-2454

## □ 참고사항

- 재허가 신청서류 다운방법

-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([www.kcc.go.kr](http://www.kcc.go.kr)) 공지사항에 게시 또는 전자메일 주소를 뉴미디어정책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신청서류를 메일로 송부 예정